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종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36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일용·단시간근로자 등의 직장가입자 편입	3

I. 개요

1. 전종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53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전종덕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8. 2.
- (3) 회 부 일 : 2024. 8.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을 직장가입자로 하지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그러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임.

이에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일용·단시간근로자 등의 직장가입자 편입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시간제공무원·교직원 등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 ----- -----.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 ----- ----- ----- -----.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삭 제>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4.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

<u><신 설></u> ③・④ (생 략)	<u>5.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u> <u>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u> ③・④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비교

□ 현행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되, 사업장의 특성·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에 따라 일정한 유형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음.¹⁾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①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② 현역병·전환복무자·군간부후보생, ③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 ④ 비상근·초단시간근로자(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⑤ 비상근·초단시간 시간제공무원·교직원, ⑥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⑦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초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

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일용근로자, 비상근 또는 초단시간근로자 등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고 있음.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률, 보험료 산정,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부담 여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 (보험료 부담률)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7.09%) 중 본인은 50%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자 등이 부담하나,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²⁾

-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는 일반적인 경우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³⁾,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등의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됨.⁴⁾

-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부담) 직장가입자는 부양가족을 피부양자로 신청하여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

2)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09로 한다.

3)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나, 지역가입자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함.⁵⁾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비교 >

구 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률	근로자	본인 50%, 사용자 50%	본인 100% (보통 세대주가 세대원의 보험료까지 합산해서 부담)
	공무원	본인 50%, 국가/지자체 50%	
	교직원	본인 50%, 사용자 30%, 국가 20%	
보험료 산정 기준	(일반적) 보수 (예외적) 보수+연2,000만원 이상 보수외 소득		소득·재산 등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부담	피부양자 등록시 보험료 면제		세대원으로서 보험료 부담

다. 검토의견

□ 현행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현역병·전환복무자·군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 비상근·초단시간근로자(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초단시간

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시간제공무원·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초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등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데,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현역병·전환복무자·군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시간제공무원·교직원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변화>

직장가입자 제외 : 현행		개정안
법률 제6조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삭제>
	현역병 등	유지
	선거 당선 공무원	유지
시행령 제9조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삭제>
	월 60시간 미만 시간제공무원, 교직원	<삭제>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근로자·사용자	유지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	유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만 고용한 사업주	<삭제>

- 개정안과 같이 일용근로자등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는 경우 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건강보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3.545%씩을 분담하게 되어 일용근로자 등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음.

□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등으로 인하여 시간제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 등은 소득수준이 정규직근로자보다 낮는데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있음에 따라 직장가입자인 정규직근로자는 납부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높은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방향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통계청의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는 425만 5천명(50.3%)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 6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⁶⁾.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근·단시간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면서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건강보험료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영세사업장 등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24년 8월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시간제근로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1~4인 업체가 38.2%, 5~9인 업체가 24.3%인 반면, 100인

6) 통계청,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2024

이상의 업체는 8.9%에 불과하여 시간제근로자의 대부분은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로 나타나는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영세사업장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짐.

< 기업규모와 시간제근로자의 분포(2024년 8월 기준) >

사업장 규모	1인~ 4인	5인~ 9인	10인~ 29인	3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이상	계
비 중	38.2%	24.3%	16.7%	10.5%	5.4%	3.5%	100%

자료: 통계청,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2024

□ 다음으로 개정안은 비상근·시간제 근로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한 취지이나,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던 가입자의 경우 오히려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편입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에도 부합하여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범위에 포함되면 보험료의 50%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또한, 초단기 근로자 등은 고용관계의 빈번한 변동으로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상실이 반복되어 직장가입자로서 실무상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일용근로자등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는 내용

으로 전종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7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다. 관계 기관 등 의견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 일용근로자, 초단기 근로자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 필요성 등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초단기 근로자 등을 고용하는 영세·소규모 사업장 등의 건보료 부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점, 고액 자산을 가진 지역가입자가 초단시간 근로만으로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어 고액의 보험료를 회피하는 제도 악용이 가능하다는 점,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초단기 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로 편입 시 새롭게 보험료 납부를 하여야 하는 등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반드시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기도 곤란하다는 점, 초단기 근로자 등은 고용관계의 빈번한 변동으로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상실이 반복되어 직장가입자로서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에 한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3

1)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에서는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를 ‘근로자’로 정의하면서,⁷⁾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⁸⁾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제1호),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제2호),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제3호),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제4호)는 이 법에 따른 ‘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음.⁹⁾

7)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8)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후략)

9)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

<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범위 >

구분	범위
사업장 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
제외 대상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단,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사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의 사업장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사람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단,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사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가입자의 종류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¹⁰⁾하면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¹¹⁾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을 직장가입자로 하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음.¹²⁾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범위 >

구분	범위
직장 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제외 대상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 10)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 11)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 1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구분	범위
제외 대상 (계속)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 「고용보험법」¹³⁾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¹⁴⁾은 근로자를 사용하

13)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삭제 <2024. 6. 2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 <2017. 12. 26.>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 <2017. 12. 26.>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범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단,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제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¹⁵⁾

15)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9. 1. 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